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회 위원회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권 신설〉

■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965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추미해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4. 10. 28.
3. 회 부 일 : 2024.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나 재판을 위한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 등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듯이 국정감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IV. 검토의견

<국회 위원회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권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3조의5(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국정조사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의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위원회는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u>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6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하여야 한다.

제13조의6(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
-----제13조,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에-----

-----.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
-----사법경찰관·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국정감사·국정조사·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가-----

-----통신제한조치 또는-----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 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 ----- ----제13조의6----- ----- -----
③ 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③ -----제13조의6-- ----- ----- ----- -----
④ 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 ④ ----- ----- ----제13조의6----- ----- ----- -----.

- 개정안은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위원회가 그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절차로서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 비밀준수의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¹⁾’란 ①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②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③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④ 사용도수, ⑤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⑥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⑦ 정보통신기기 접속지의 추적자료와 같이 전기통신 사용자가 언제, 어떤 전기통신과 어떤 기지국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들임.
- 현행법상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²⁾하고 있고, 실무상 국회는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간접적으로 취득하고 있음.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2)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국회의 통제) ①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내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특정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정조사·국정감사·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 국회가 가진 행정부의 감시·견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³⁾이 적시하는 바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이 보충적 수단으로서 필요최소한으로 이용되어야 하므로 다음의 점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a)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영장주의가 적용되므로 수사기관은 법원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⁴⁾,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를 가능한 한 축소하여 통신의 비밀 등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음.

3)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4)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반면, 개정안의 경우 국회 위원회가 감사·조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범위의 제한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탐색적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음.

참고로, 헌법재판소⁵⁾는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특정 기지국을 이용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기지국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강화된 보충성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⁶⁾.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위원회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보충성 요건을 강화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국정감사 등이 어려운 경우에만 기지국 자료

5) “이동전화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점,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 기지국수사의 허용과 관련하여서는 유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같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수사가 어려운 경우(보충성)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요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18.6.28. 2012헌마538]

6)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신설 2019. 12. 31.>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조제11호바목·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b)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획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획득한 자료의 공개, 보관, 폐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비교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비밀 유지를 위해 업무처리 지침을 대법원규칙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⁷⁾.

다만,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절차의 관여자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⁸⁾, 국회 위원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

7)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④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허가여부·허가내용 등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청취의 허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등의 승인(이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그 허가과정·허가여부·허가내용등에 대한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안, 의안번호 4965호)」 제13조의6(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통신기관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외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법원에서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허가여부·허가내용 등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인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TV 등 매체를 통해 중계되는 공개회의인 점⁹⁾, 국회의원은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가지는 점¹⁰⁾을 고려하면, 위원회 회의에서 민감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의도치 않게 공개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회 위원회 및 담당 공무원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업무처리 지침,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기준 등에 대해 국회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으로 국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보장하면서도 통신의 비밀 등이 조화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65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 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인사청문회법」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0) 「대한민국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